■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국세체납액 분납 계획서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FAX	
	주소 (사업장)			

	순번	세목	전자납부번호	체납금액
분납대상 체납금액				

	회차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회차	납부예정일	납부 금액
분납계획	1			5		
	2			6		
	3			7		
	4			8		

작성방법	1. 분납대상 체납금액은 회차별로 먼저 납부할 체납금액순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납부번호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 '체납 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상기와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 예정일에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자동차, 예금계좌 등 재산압류 및 강제매각·추심 2. 금융기관에 체납자료통보(체납액 5백만원 이상)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영업허가의 등록 제한, 정지, 취소) 4. 출국규제(체납액 5천만원 이상)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세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